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提案年月日 1993. 12. 7.

提 案 者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長

1. 代案의 提案經緯

1993年 5月 12日 鄭大哲·朴相千·李永權·趙淳昇·姜昌成·林福鎮·
崔斗煥·姜秀林議員 外86人이 發議한 國家安全企劃部法改正法律案과
1993年 10月 28日 政府가 제출한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第165回國會(定期會)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4次
委員會(1993. 12. 7)에서 이를 각각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委員會 代案을 提案하기로 함.

2. 代案의 提案理由

國家安全企劃部가 國家情報機關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職務의 범위를 조정하고 國家安全企劃部豫算에 대
한 實質審查등 立法府의 統制를 강화하여 國家安全企劃部의 政治的
中立을 制度的으로 보장하고 職權濫用등의 소지를 제거하므로써 情報
機關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백

3. 代案의 主要骨子

- 가. 國家安全企劃部는 大統領所屬下에 두며 大統領의 指示·監督을 받도록 함(案 第2條).
- 나. 國家安全企劃部 職務중 國內保安情報業務에 "防諜·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을 추가함(案 第3條第1項第1號).
- 다. 國家安全企劃部 職務중 搜查權의 범위에서 軍刑法中 利敵의 罪, 軍事機密漏泄罪 및 國家保安法에 규정된 罪中 國家保案法 第7條 및 第10條에 規定된 罪를 삭제함(案 第3條第1項第3號).
- 라.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은 존치하되 各級機關에 대한 保安監查는 제외하도록 함(案 第4條第2項).
- 마. 國家安全企劃部는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特別市·直轄市·道에 支部를 둘 수 있도록 함(案 第4條第2項).
- 바. 部長·次長 및 기타 職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가입하거나 政治活動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案 第9條第1項), 職權을 濫用할 수 없도록 함(案 第11條第1項).
- 사.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으로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刑事訴訟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犯罪搜查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案 第11條第2項).
- 아. 國家安全企劃部의 모든 豫算에 관하여 實質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國會情報委員會에 제출하도록 하고(案 第12條第4項), 國會情報委員會는 國家安全企劃部의 豫算內譯을 公開하거나 漏泄할 수 없도록 함(案 第12條第5項).

한국

- 자. 部長은 國會豫算決算審查 및 案件審查와 監查院의 監查에 있어서
國家安全保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에 한하여 資料
의 提出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案 第13條第1項).
- 차. 情報調整協議會 制度를 廢止하고(現行 第13條), 國家安全企劃部職
員의 政治活動 關與 및 職權濫用에 대하여 罰則을 둠(案 第18條 및
第19條).

공백

法律 第 號

國家安全企劃部法中改正法律案

國家安全企劃部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2條 및 第3條를 第3條 및 第4條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하고, 第2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條(地位) 安全企劃部는 大統領所屬하에 두며, 大統領의 指示·監督을 받는다.

第3條(職務) ①安全企劃部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수행한다.

1. 國外情報 및 國內保安情報(對共·對政府顛覆·防諜·對テ러 및 國際犯罪組織)의 蒐集·작성 및 配布
2. 國家機密에 속하는 文書·資材·施設 및 地域에 대한 保安業務
3. 刑法중 內亂의 罪, 外患의 罪, 軍刑法중 叛亂의 罪, 暗號不正使用罪,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다만, 第7條, 第10條에 規定된 罪는 제외한다)에 대한 搜查
4. 安全企劃部 職員의 職務와 관련된 犯罪에 대한 搜查
5.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다만, 各級機關에 대한 保安監查는 제외한다.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職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第5號에 정하는 企劃·調整의 범위와 對象機關 및 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組織) ①安全企劃部의 組織은 國家安全企劃部長(이하 "部長"이라 한다)이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공연

②安全企劃部는 職務遂行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特別市·直轄市·道에 支부를 둘 수 있다.

第4條 및 第5條를 第5條 및 第6條로 하고, 第5條(총전의 第4條)第1項중 "次長 2人"을 "次長 2人以上"으로 하며, 第6條(총전의 第5條)중 "組織·所在地·定員·豫算 및 決算"을 "組織·所在地·및 定員"으로 한다.

第6條 및 第7條를 第7條 및 第8條로 하고, 第7條(총전의 第6條)第5項중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法律로 정한다"로 한다

第8條를 第9條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政治關與의 금지) ①部長·次長 및 其他職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가입하거나 政治活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서 政治活動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政黨이나 政治團體의 結成 또는 加入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職位를 이용하여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輿論을 조성할 目的으로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에 대하여 讚揚 또는 誹謗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流布하는 행위
3.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을 위하여 寄附金募集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의 資金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の 選舉運動을 하거나 選舉關聯對策會議에 관여하는 행위
5. 所屬職員이나 다른 公務員에 대하여 第1號 내지 第4號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各號의 행위와 관련하여 報償 또는 報復으로써 이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約束 또는 告知하는 행위

第9條를 第10條로 하고, 同條(총전의 第9條)第2項중 "給與"를 "報酬"로 한다.

한국

第10條 내지 第12條를 第12條 내지 第14條로 하고,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第12條(종전의 第10條)第1項중 "豫算會計法 第22條"를 "豫算
會計法 第29條"로, "取扱한다"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 내지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第13條(종전의 第11條) 및 第14條(종전의 第12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職權濫用의 금지) ①部長·次長 및 기타 職員은 그 職權을 濫用하여
法律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거나 다른
機關·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安全企劃部 職員으로서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軍司法
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刑事訴訟法 第34條(辯護人の 被告人·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및
第209條에 의하여 搜查에 準用되는 第87條(拘束의 통지), 第89條(拘束된
被疑者와의 接見, 受診), 第90條(辯護人の 依頼)와 軍事法院法의 關係
規定(第63條·第127條·第129條 및 第130條)등 犯罪搜查에 관한 適法
節次를 遵守하여야 한다.

③安全企劃部의 歲出豫算의 요구는 그 款·項을 國家安全企劃部費와
情報費로하여 總額으로 하며, 그 算出內譯과豫算會計法 第31條에 規定
한豫算案의 添附書類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安全企劃部의豫算中 미리企劃하거나 예전할 수 없는 秘密活動費는
總額으로 다른 機關의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⑤國會情報委員會는 安全企劃部의豫算審議를 非公開로 하며, 國會情報
委員會는 安全企劃部의豫算審議를 非公開로 하며, 國會情報

한국

委員會의 委員은 安全企劃部의 豫算內譯을 公開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國會에서의 證言등) ①部長은 國會豫算決算審查 및 案件審查와 監查院의 監查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 機密事項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資料의 제출 또는 答辯을 거부 할 수 있다.

②部長은,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國會情報委員會에서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요구받은 경우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 證言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情報委員會등은 그 議決로써 國務總理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國務總理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없다.

③部長은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資料와 證言 또는 答辯에 대하여 이를 公開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法에서 '國家機密'이라 함은 國家의 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人員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다른 國家 또는 集團에 대하여 秘密로 할 사실, 物件 또는 知識으로서 國家機密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第14條(會計檢查 및 職務監察의 보고) 部長은 그 책임하에 所管豫算에 대한 會計檢查와 職員의 職務遂行에 대한 監察을 행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과 國會情報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3條를 削除 한다.

공백

第14條 및 第15條를 第15條 및 第16條로 하고, 第16條(종전의 第15條)중 "第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를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로 한다.

第16條를 第17條로 하고, 同條(종전의 第16條)第2項中 "第7條"를 "第11條"로 한다.

第18條 및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條(政治關與罪) ①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입하거나 政治活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者は 5年이하의 懲役과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9條(職權濫用罪) ①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거나 다른 機關·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과 7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司法警察官吏(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職務를 수행하는 者가 辯護人의 被疑者와의 接見·交通·受診, 拘束의 통지, 辯護人 아닌 者의 被疑者와의 接見·受診, 辯護人의 의뢰에 관한 刑事訴訟法 規定을 遵守하지 아니하여 被疑者, 辯護人 또는 關係人の 權利를 침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安全企劃部는 이 法 第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國家保安法 第7條第3項·第5項 및 각 그 罪의 미수, 예비·

한국

음모의 罪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間 搜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搜查중인 事件은 그 기간 終了日로부터 3月이내에 다른 搜查機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安企部가 搜查중인 事件중 이 法 第3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罪(다만, 國家保安法 第7條第3項 및 第5項에 規定된 罪는 제외한다)에 관한 事件이외의 事件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다른 國家搜查機關에 인계하여야 한다.

한국
한국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安全企劃部 (이하 "安全企劃部"라 한다)의 組織 및 職務範圍와 國家安全保障業務의 效 率的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新設></p>	<p>第1條(目的) (現行과 같음)</p>
<p>第2條(職務) ①安全企劃部는 다음 各號 에 정하는 職務를 수행한다.</p> <p>1. 國外情報 및 國內保安情報(對共 및 對政府顛覆)의 蒐集·作成 및 配布</p> <p>2. <省略></p> <p>3. 刑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軍 刑法中 叛亂의 罪·利敵의 罪·軍 事機密漏泄罪·暗號不正使用罪, 軍 事機密保護法·國家保安法 및 反共 法에 規定된 犯罪의 搜查</p> <p>4. <省略></p>	<p>第2條(地位) 安全企劃部는 大統領 소속하 에 두며, 大統領의 指示·監督을 받는다.</p> <p>第3條(職務) ①.....各號 의</p> <p>1. 國內保安情報(對共 · 對政府顛覆·防諜·對泰러 및 國際 犯罪組織)의</p> <p>2. <現行과 같음></p> <p>3. 暗號不正使用罪,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 保安法에 規定된 罪(다만, 第7條, 第10條에 規定된 罪는 제외한다)에 대한 搜查</p> <p>4. <現行과 같음></p>

한국
한국

現 行	改 正 案
<p>5. 情報 및 保安業務의企劃·調整</p> <p>②第1項第2號의職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事項과第5號에정하는企劃·調整의범위와對象機關및節次등에관한事項은大統領令으로정한다.</p> <p>第3條(組織) ①安全企劃部의組織은國家安全企劃部長(이하"部長"이라한다)이정한다.</p> <p>②安全企劃部는필요한地域에支부를둘수있다.</p>	<p>5. 情報 및 保安業務의企劃·調整.</p> <p>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保安監查는 제외한다.</p> <p>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p> <p>.....</p> <p>.....</p> <p>.....</p> <p>第4條(組織) ①.....</p> <p>.....</p> <p>....大統領의승인을얻어정한다.</p> <p>②.....職務遂行상특히필요한경우에는大統領의승인을얻어特別市·直轄市·道에.....</p> <p>第5條(職員)</p> <p>.....</p> <p>.....</p> <p>.....2人이상을.....</p> <p>②<現行과 같음></p>
<p>第4條(職員) ①安全企劃部에部長·次長 및企劃調整室長과기타필요한職員을둔다. 다만, 특히필요한경우에는次長2人을둘수있다.</p> <p>②<省略></p> <p>第5條(組織등의非公開) 安全企劃部의組織·所在地·定員·豫算 및 決算是國家安全保障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를公開하지아니할수있다.</p>	<p>第6條(組織등의非公開)</p> <p>.....所在地및定員은.....</p> <p>.....</p> <p>.....</p>

공연

現 行	改 正 案
第6條(部長·次長 및企劃調整室長) ① ~ ④ <省 略> ⑤部長·次長 및企劃調整室長 이외의 職員의人事에 관하여는 따로 <u>法律이</u> <u>정하는 바에 의한다.</u>	第7條(部長·次長 및企劃調整室長) ① ~ ④ <現行과 같음> ⑤..... <u>法律로</u> <u>정한다.</u>
第7條(兼職禁止) <생략>	第8條(兼職禁止) <現行 第7條와 같음>
第8條(政治活動의 금지) 部長·次長 및 企劃調整室長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 治活動에 관여할 수 없다.	第9條(政治關與의 금지) ①部長·次長 및 其他職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가입 하거나 政治活動에 關與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서 政治活動에 關與하는 행위 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政黨이나 政治團體의 결성 또는 가입 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職位를 이용하여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 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輿論을 조성할 目的으로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 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流布 하는 행위

공백

現 行	改 正 案
	<p>3. 特定政黨 또는 特定政治人을 위하여 寄附金募集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 위 또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 資機關의 資金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p> <p>4.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の 選舉運動을 하거나 選舉關聯對策會議에 關與하는 행위</p> <p>5. 所屬職員이나 다른 公務員에 대하 여 第1號 내지 第4號의 行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號의 行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주거나 이를 約束 또는 告知하는 행위</p>
<p>第9條(兼職職員) ①<省 略></p> <p>②兼職職員의 原所屬機關의 長은 兼職 職員의 모든 身分上의 權益과 紙與를 보장하여야 하며, 兼職職員을 轉補發 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部長의 同意 를 얻어야 한다.</p> <p>③<省 略></p>	<p>第10條(兼職職員) ①<現行 第9條第1項과 같음></p> <p>②..... 報酬를</p> <p>③<現行 第9條第3項과 같음></p>

한국

現 行	改 正 案
<p>④<省 略></p> <p><新 設></p>	<p>④<현 행 제9조제4항과 같음></p> <p>第11條(職權濫用의 금지) ①部長·次長 및 기타 職員은 그 職權을 濫用하여, 法律 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거나 다른 機關·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 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p> <p>②安全企劃部 職員으로서 第16條의 規定 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軍司法警察官吏 를 포함한다)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刑事訴訟法 第 34條(辯護人の 被告人·被疑者와의 接見 , 交通, 受診) 및 第209條에 의하여 搜查 에 準用되는 第87條(拘束의 통지), 第 89條(拘束된 被疑者와의 接見, 受診), 第90條(辯護人の 依頼)와 軍事法院法의 關係規定(第63條·第127條·第129條 및 第130條)등 犯罪搜查에 관한 適法節次 를 遵守하여야 한다.</p>
<p>第10條(豫算會計) ①安全企劃部는 豫算會計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獨</p>	<p>第12條(豫算會計) ①.....豫算會 計法 第29條의</p>

공백

現 行	改 正 案
立機關으로 取扱한다. ②安全企劃部의 歲出豫算의 要求는 總額으로 하며, 그 算出內譯과豫算會計法 第29條에 規定한豫算의 添附書類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한다.한다. ②..... 그 款·項을 國家安全企劃部費와 情報費로 하여 總額으로 하며, 그 算出內譯과豫算會計法 第31條에 規定한豫算案의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安全企劃部의 歲出豫算의 款·項은 國家安全企劃部費·情報費로 한다.	③.....豫算중 미리企劃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秘密活動費는 總額으로 다른 機關의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④安全企劃部의豫算是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機關의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④安全企劃部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會 情報委員會에 安全企劃部의 모든豫算에 관하여 實質審查에 필요한 細部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 設>	⑤國會 情報委員會는 安全企劃部의豫算審議를 非公開로 하며, 國會 情報委員會의 委員은 安全企劃部의豫算內譯을 公開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國會에 대한 證言등) ①部長은 國會의豫算審查 및 國政調查와 監查院의 監查에 있어서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限하여 資料의 提出·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다.	第13條(國會에서의 證言등) ①部長은 國會豫算決算審查 및 案件審查와 監查院의 監查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資料의 제출

한국

現 行	改 正 案
②部長은 國家機密에 속하는 事項에 限하여 國會의 質問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다. ②部長은,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國會 情報委員會에서 資料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요구받은 경우와 國會에서 의 證言 · 鑑定등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資 料의 제출 또는 證言을 요구받은 경우에 는 軍事 · 外交 · 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 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資料의 제출 , 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 情報委員會등은 그 議決 로써 國務總理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國務總理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資料 의 제출, 證言 또는 答辯을 거부할 수 없다.
<新 設>	③部長은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한 資料와 證言 또는 答辯에 대하여 이 를 公開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新 設>	④이 法에서 '國家機密'이라 함은 國家 의 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

한국

現 行	改 正 案
第12條(會計檢查 및 監察) 部長은 그 責任下에 所管業務에 대한 會計檢查와 事務 및 職員의 職務에 대한 監察을 행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에게 보고 한다.	기 위하여 한정된 人員에게만 知得이 허 용되고 다른 國家 또는 集團에 대하여 秘密로 할 사실, 物件 또는 知識으로서 國家機密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第13條(情報調整協議會) ①國家情報政 策의樹立과 情報判斷 및 그 運營에 관한 事項을 協議하기 위하여 安全企 劃部에 情報調整協議會를 둔다. ②情報調整協議會의 機能·構成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會計檢查 및 職務監察의 보고) 部長은 그 책임하에 所管豫算에 대한 會計檢查와 職員의 職務遂行에 대한 監察을 행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과 國會 情報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削除>
第14條(國家機關등에 대한 協助要請) <省略>	第15條(國家機關등에 대한 協助要請) <現行 第14條와 같음>
第15條(司法警察權) 安全企劃部職員으 로서 部長이 地名하는 者는 이 法 第2 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관한法律 및 軍事法院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	第16條(司法警察權) 第3 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한국

現 行	改 正 案
와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第16條(武器使用) ① <省 略>	第17條(武器使用) ①<現行 第16條第1項과 같음>
②第1項의 武器使用에 있어서는 警察 官職務執行法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 다.	②..... 第11條의
<新 設>	第18條(政治關與罪) ①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입 하거나 政治活動에 관여하는 行위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과 5年이하의 資格 停止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 다.
<新 設>	第19條(職權濫用罪) ①第11條第1項의 規定 에 위반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거나 나 다른 機關 · 團體 또는 사람으로 하 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과 7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 企劃部 職員으로서 司法警察官吏(軍司 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職務를 수행하

한국

現 行	改 正 案
	<p>는 者가 辯護人의 被疑者와의 接見 · 交通 · 受診, 拘束의 통지, 辯護人 아닌 者의 被疑者와의 接見 · 受診, 辯護人의 依賴 에 관한 刑事訴訟法 規定을 遵守하지 아 니하여 被疑者, 辯護人 또는 關係人の 권리를 침해한 者는 1年이 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③第1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 한다.</p>
<p>附 則('87. 12. 4)</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25日 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내지 第4條 省略</p>	<p>附 則</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第2條(經過措置) ①安全企劃部는 이 法 第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國家保安法 第7條第3項, 第5項 및 각 그 罪의 미수, 예비 · 음모의 罪에 대하여 여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간 搜查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終了시 搜查중 인 事件은 그 期間終了日로부터 3月이 내에 다른 搜查機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 당시 安全企劃部가 搜查중</p>

한국

現 行	改 正 案
	<p>인 事 件 은 그 期 間 終 了 日 从 而 3 月 이 내에 다른 搜查 機 關 에 인 계 하 여 야 한 다.</p> <p>② 이 法 施 行 当 시 安 全企 劃 部 가 搜查 중</p> <p>인 事 件 중 이 法 第 3 條 第 1 項 第 3 號 에 规 定 된 罪 (다만, 國 家 保 安 法 第 7 條 第 3 項 및 第 5 項 에规 定 된 罪 是 제외 한다) 에 관 한</p> <p>사 건 이 외 의 사 건 은 이 法 施 行 日 从 而 부 터 3 月 이 내에 다른 國 家 搜查 機 關 에 인 계 하 여 야 한 다.</p>

공
백
기